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8호의3서식] <신설 2016.1.21.>

전용용기 제조업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업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
신고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
업종(생산 전용용기)		등록번호	
[ ] 휴업 [ ] 폐업 연월일 [ ] 재개업	. . .	재개업 예정 연월일 (휴업인 경우)	. . .
[ ] 휴업 [ ] 폐업 사유 [ ] 재개업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

전용용기 제조업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업 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휴업·폐업의 경우: 등록증 원본 2. 재개업의 경우: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										
신고서 작성	➜	접수	➜	검토	➜	실태조사	➜	결재	➜	신고수리
신고인						유역(지방)환경청장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